

섹션 1557: 성차별을 금지하는 보호조치

섹션 1557은 부담적정보험법(ACA)의 공민권법 조항입니다. 섹션 1557은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특정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상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섹션 1557 최종 규칙은 Medicare 환자를 받는 병원이나 Medicaid 지급금을 받는 의사, 건강 보험 마켓 플레이스 및 마켓 플레이스에 참여하는 보험 발행사,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보건복지부)가 자체로 실시하는 일체의 보건 프로그램 등 HHS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일체의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섹션 1557에 따라 금지되는 성차별에 다음을 근거로 한 차별도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 개인의 성별
- 임신, 출산 및 이와 관련된 의료적 상태

성차별을 금지하는 보호조치

- 어떤 개인도 성별을 근거로 의료 서비스나 건강 보장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 여성도 의료 서비스를 받고 보험을 획득함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성별에 따라 제공되는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해당 주체가 명백하게 타당한 사유를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성별에 따라 제공되는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이 중요한 보건 또는 과학적 목표 달성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경우이다.

섹션 1557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hhs.gov/civil-rights/for-individuals/section-1557을 참조하십시오.